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10 발의연월일: 2021. 3. 24.

발 의 자: 박홍근 · 고용진 · 김민석

김수흥 · 김원이 · 김주영

박찬대 · 오영환 · 이광재

이형석 · 정일영 · 조승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과세자료 수집협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제104조의3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0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2(과세자료 수집 협조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 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173조제1항의 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제공된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이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4조의30"을 각각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수집 협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4조의32(과세자료 수집 협조
	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
	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173조제1항의 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
	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202
	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제공된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이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
	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 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 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 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 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 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 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 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 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 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 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 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 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 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 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 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 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 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 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 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 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 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 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 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 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 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

.
②
제104조의30, 제104
조의32

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	
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	
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	
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